

보도시점 2026. 9. 7.(월) 12:00 / 배포 2026. 9. 7.(월) 08:30
< 9. 8.(화) 조간 >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8.부터 9. 28.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하 각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라 한다.

이번 과태료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개정한다.

* 최근 5년(‘21~’2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였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된다. 그런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공시 지연일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과거 위반횟수, 공시 지연일수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임의적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 과태료를 결정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 원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1일마다 10만 원씩 가산한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복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

* 최초 위반 등에 따른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여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 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 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팩스 : 044-200-5224 * 전자우편 : kdh1579@korea.kr

[붙임] 과태료 부과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200-4932)
		담당자	조사관	권다혜 (044-200-4938)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VI.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u>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u> 2.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생략)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u>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u> <신설>	VI. ----- 1. ----- ----- ----- -----, <단서 삭제> 2. -----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u>과거 5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1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2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중하며, 3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중한다.</u> ----- ----- -----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u>과거 5년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u>

현행	개정안
(2) (생략)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략) (2) <u>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 (점검연도 포함) 간 범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u> (3) (생략) (4) <u>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u> (가) <u>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u> (나) <u>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u>	<u>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u> (3) (현행 (2)와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u>삭제</u> (3) (현행과 같음) (4) <u>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u> 부 칙 <u>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개정안
VI.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u>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u> 2. (생략)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생략)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략) (2) <u>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u> <u><신설></u>	VI. ----- 1. ----- ----- ----- ----- . <단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u>과거 5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1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2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중하며, 3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중한다.</u> (3) <u>(2)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거 5년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u>

현행	개정안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략) (4) <u>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u> (가) <u>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u> (나) <u>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u>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u>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	<u>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u> 다. ----- (1) ~ (3) (현행과 같음) (4) <u>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u> 4. ----- ----- ----- ----- ----- -----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 부 칙 <u>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u>